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28

발의연월일: 2022. 5. 9.

발 의 자:이상헌・김두관・김성환

김용민 · 김진표 · 박성민

서삼석 • 이수진 • 전용기

조응천 · 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 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 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 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 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

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령 금융소비자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 이용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취약한 고령 금융소비자를 금융사기, 부양자나 보호자 등으로부터의 금융착취 등 금융피해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고령자 대상의 금융피해 사례 및 의심사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 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 정 안 제29조의2(고령 금융소비자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이용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서비스이용에 취약한 고령 금융소비자를 금융사기, 부양자나보호자 등으로부터의 금융착취등 금융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되려가 대상의 금융피해 사례및 의심사례를 보고하게 할수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고, 그 사항에
	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